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7. 8 선고 2019가단545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

담당 변호사 임지혜, 정진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두완수, 최웅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6. 3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익산시 D 대 909㎡ 및 E 임야 479㎡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F 사이에 2019. 2. 25.

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F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. 2. 25. 접수

제7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되는 사실관계

가. 원고는 F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. 6. 8. 'F는 원고에게 13,113,877원 및 그중 6,997,367원에 대하여 2017. 5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13543).

나. F의 부 G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는 1996. 12. 2. 사망하였다.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1996. 4. 21. 사망한 장남 H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피고(상속지분 3/36), 자녀 I, C, J(상속지분 각 2/36)을 비롯하여 망인의 장녀 K, 차녀 F, 차남 L(상속지분 각 1/4)이 있다.

다.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. 2. 25. 상속재산인 익산시 D 대 909㎡ 및 E 임야 479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'이라고 한다),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F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익산시장,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, 무자력인 F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,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는 1980. 9. 6. 망인의 장남인 H과 혼인하여 1996. 12. 2.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, 그 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,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,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것 이외에도 위 상속재산 중 일부는 장손인 C의 소유로, 나머지 일부는 차남인 L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, 이는 망인의 생전 유지와 위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위와 같은 취지에서 F 뿐만 아니라 F의 언니인 K도 망인의 위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동의한 점, F는 1987. 12. 1.경 출가한 이후 피고를 비롯하여 친정 식구와 그다지 왕래가 잦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F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가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3)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강호